

‘동포’의 수사학과 ‘역사’의 감각*

- 1900~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권 보 드 래**

차 례

- | | |
|--------------------------|------------------------|
| I. 도입: ‘동포’라는 말 | IV. 황제권의 강화와 ‘동포’의 재조정 |
| II. 1900~04년과 『황성신문』의 성격 | V. 역사의 발견과 지평의 확대 |
| III. 『독립신문』과 ‘동포’의 전략 | VI. ‘동포’와 ‘민족’, 그 중간지대 |

I. 도입: ‘동포’라는 말

근대 한국에서 (민족)국가의 구성원을 지칭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표현은 사뭇 다양하다. 국민·민족·인종·인민·신민·백성과 民·民人·邦人이라든가 동포·형제 등. 오늘날을 기준으로, 이 중 어떤 단어는 한반도 일부에서만 쓰이고 있고, 어떤 단어는 사라졌으며, 반면 점차 강력한 지배력을 획득해 온 단어도 있다. ‘동포’란 이들 단어군에 속해 있으면서 특이한 역사를 기록한 단어이다. 국민·민족·인종 같은 신조어가 출현이 늦었거나 불안정성을 오래도록 지니고 있었다면, ‘동포’라는 단어는 일찍 출현했으며 비교적 일관된 빈도와 용법을 보여주었다. ‘동포’는 유학생 잡지인 『대조선친목회회보』 등에서 먼저 쓰였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KRF-2002-AM1044).

** 서울대학교 강사

으나 『독립신문』을 통해 본격 유포되었고, 특히 1898년 만민공동회 시기에 급속하게 유행어가 된다. 출현빈도만 갖고 따지자면 ‘동포’는 1896년에 26회, 1897년에 45회, 1899년에 32회 등장한 반면 1898년에는 총 247회에 걸쳐 출현했으며, 특히 만민공동회가 벌어졌던 11~12월에는 71차례의 출현을 보이고 있다.¹⁾ 이같은 숫자만을 토대로 해도 ‘동포’가 근본적으로 ‘呼名의 이름’이었고 ‘거리의 단어’였으며 ‘정치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용법을 검토해 보면 이런 짐작은 일층 신빙성을 얻는다.²⁾

이처럼 내부 굴곡이 있었음에도 ‘동포’는 1894년 이후 1910년까지, 그리고 더 길게 잡으면 1920년대 초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애용되었다. ‘민족’이 현재 의미로는 1904년 이후 쓰이기 시작했고³⁾ 한반도 거주민으로서의 ‘국민’이 1910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으며 ‘인민’이 1920년대 이후 계급적 의미를 획득해 간 반면, ‘동포’는 1894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별다른 의미변화 또한 겪지 않은 듯 보인다. ‘동포’라는 단어를 거점으로 삼아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 및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동포’는 출발부터 수사적인 용어였기에 특정 시기마다의 함축성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天地父母’인 국왕과 수직적 질서 속에 놓이는 ‘동포’, 同類 사이의 수평적 연대로 조직되는 ‘동포’, 그 확산으로서의 ‘사해동포’라는 거대지평 등—언어와 개념에 투영된 현실, 언어와 개념이 만들어 낸 현실을 보려 할 때 ‘동포’는 흥미로운 출발점

-
- 1) 이 숫자는 앞서 권용기,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집, 1999에서 조사한 숫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1898년 11~12월은 59회, 연도별로는 1896·97·98·99년이 각각 18·38·176·24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권용기의 통계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의 ‘근대전환기 인쇄매체를 통해 본 근대지식과 개념의 형성 및 변모 양상에 관한 연구’팀의 『독립신문』 『황성신문』 기사 입력 작업을 토대로 했는데, 예컨대 ‘각국명답’란에 “인민의 소리는 상제의 소리라”는 격언이 며칠 계속될 경우 그 각각을 1회 출현으로 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동포’의 경우 같은 문제는 비교적 적으리라 생각하지만 속고가 필요하겠다.
 - 2) 『독립신문』 발간 시기 매해 10~12월에 쓰인 ‘동포’의 구체적 용법에 대한 보고로는 권보드래,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독립신문』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3 참조.
 - 3) 이에 대한 앞선 연구로는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의식」, 『한국사학보』 10호, 2001. 3 참조.

이 된다.

II. 1900~04년과 『황성신문』의 성격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까지, 1899~1905년⁴⁾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대한국 국제』 반포가 상정하듯 황제의 절대권이 천명되었던 시기이고, 거리에 3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할 정도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었던 시기이다. 황제와 친위각료를 중심으로 전기·철도 등이 채택되고 量務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들 사업은 철저히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신사·전화과·철도과가 궁내부 산하에 설치될 정도로 황실재정이 비대해져⁵⁾ 심지어 그 규모가 국가재정을 초과할 정도였다. 열강 사이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자주적 개혁을 펼칠 가능성이 있었던 예외적 시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해 있지만, 그마저 해석의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⁶⁾ 이 글에서는, 논란에 싸여 있는 1900~04년의 ‘현실’을 직접 문제삼는 대신 담론·개념의 場을 상대하려 한다. 때로 ‘현실’의 익숙한 힘에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텍스트, 그것

4) 개화기·계몽기 등으로 불리는 1894~1910년 중에서도 이 시기는 이색적인 시기이다. 담론·사상에 대한 조명이 가장 미흡한 것도 이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 ‘1900~04년’이라 지칭한 시기의 함의는 사실상 ‘1899~1905년’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본 연구는 담론·개념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에 접근하고 있는바 『독립신문』·『대한매일신보』라는 대표매체가 각각 1896~99년과 1905~10년을 아우르고 있고, 이 글에서 주 텍스트로 한 『황성신문』에서는 그 ‘사이’만을 보려 했다는 점에서 ‘1900~04년’이라는 명칭을 내세운 데 지나지 않는다. 덧붙여, 독립협회 해산 이후 신질서의 정비가 끝난 것이 1900년에 이르러서요, 러일전쟁은 1904년 2월의 발발 자체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현실’의 문제 역시 참조항으로 특기해 둘 수 있겠다. 요컨대 ‘현실의 변화’와 ‘담론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1900~04년’이 적절한 명칭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5) 『고종시대사·4』 국사편찬위원회, 1970, 912면. 이하 당대 사료를 간략하게 인용할 때는 각주를 다는 대신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6) 이 시기의 성격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광무개혁’ 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8호, 1993, 342~64면 참조.

도 官의 텍스트가 아니라 민간의 텍스트에 표현된 한에 있어서 ‘현실’을 문제삼겠다는 것이 본뜻이다.⁷⁾

텍스트에 대해서라면, 1900~04년에 서적 발행이 드물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1895~99년 사이 활발하게 교과서 편찬에 나섰던 학부에서는 1907년까지 사실상 교과서 발행을 중지한다.⁸⁾ 민간에서는 書鋪 설립 자체가 드물었던 가운데⁹⁾ 『목민신서』 『흠휼신서』와 『미국독립사』 『파란말년전사』 『법국혁신전사』 『청국무술정병기』 등 몇 종만이 광고되는 데 그친다. 정기간행물로는 짧은 시기 동안 발행한 『시사총보』를 제외한다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있었을 뿐이다. 독립신문사는 사옥 반환 압력 등에 시달리다(『고종시대사』 4) 935) 1899년 12월로 신문 발행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1900~04년을 읽어내고자 할 때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것이며, 특히 ‘부녀자의 신문’이라는 제한성을 표방한 『제국신문』보다 ‘보편기획’으로 제안되었고 널리 구독된 『황성신문』(『황성』 1904. 2. 24; 3. 25)은 일층 더 주목받아 마땅할 것이다.

『황성신문』은 『독립신문』과 달리 처음부터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현실과 중화문명권이라는 연면한 전통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으며, 이 점에서 『舊本新參』을 내세운 광무정권과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있었다. 물론 『황성신문』이 맞본 제약은 혹독한 것이었지만, 황성신문사가 재정 위기에 놓였을 당시 황제가 신문값 督捧을 내부에 지시했을 정도로(『제국』 1903. 2. 17; 『황성』 1903. 2. 23; 7. 27) 정부와의 관계에 크나큰 갈등은 없었던 듯 보인다. 『황성신

7) 심사과정에서 문학 텍스트를 보완하는 편이 좋으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1900~04년은 문학 텍스트가 빈곤했던 시기이다. 『독립신문』의 창가도 『대한매일신보』의 계몽가사도 이 때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신소설은 1906년부터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문학 관련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왜 1900~04년에는 문학적 텍스트가 생산되지 않았나?’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함축되어 있기를 기대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후를 기약한다.

8)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111면. “학부의 교과서 편찬이 한동안 중단되었던 것인지 혹은 전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9)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설립된 서점에 대한 기본 정보로는 위의 책, 82~88면 참조.

문』은 국한문 표기를 선택했으며 개화의 필요와 폐해를 함께 지적하는 등 상황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견지하였고, 교육·위생·여성문제 등 부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新과 舊의 타당성을 함께 인정하는 수사학을 발휘했다. 『황성신문』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이런 면모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가 바로 1900~04년이다. 『황성신문』은 이 시기에 直筆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불만을 자주 받았고(『황성』 1900. 11. 12; 1902. 4. 7, 9. 9 등 다수), 선불리 과격한 언론을 떠다가는 공연히 폐간이나 초래할지 모른다는 변명을 앞세우고 있다. 이같은 제약, 그리고 이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우회(迂回)가 이 글에서의 관심이다. 『황성신문』은 어떤 면에서 1894~98년을 볼 때 主자료였던 『독립신문』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비단 『황성신문』만의 특색이 아니라 1900~04년 전반의 특색이라라는 것이다. 인간적 주체 대신 ‘시대’와 ‘인식지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1900~04년, 계몽¹⁰⁾은 어떤 우회로를 걸어야 했는가?

III. 『독립신문』과 ‘동포’의 전략

1896~99년 발행된 『독립신문』의 일관된 강조점은 주지하다시피 ‘信’이었다. 약소국일수록 신의를 지키고 의지해야 하며(『독립』 1898. 1. 22; 8. 16) 신의 없이는 사람될 자격도 없다는 『독립신문』(-독립협회)¹¹⁾의 주장이 어찌나 감염력이 높았던지, 만민공동회 당시 대표들과 만난 황계조차 ‘信’을 강조하면서 “信

10) ‘계몽’의 의미가 정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의 합리화·탈마법화 과정’이라는 원론적 의미보다 ‘민권의 기획이자 국가의 기획’이라는 의미로 ‘계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896~99년이라면 『독립신문』, 1905~10년에는 『대한매일신보』와 각종 학회지를 중심으로 표방된 담론·사상의 기본 구조를 ‘계몽’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1)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던 『대조선독립협회회보』와 『독립신문』을 비교해 보면 국한문 위주 대 순국문 고집이라는 문체상의 차별성을 비롯해 적잖은 차이를 목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독립신문』 역시 독립협회의 기관지 구실을 했다는 주장을 따르기로 한다(신용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사회사상편』, 한 국일보사, 1975 참조).

은 五德의 樞紐“라고 할 정도였다(『고종시대사4』 723, 745). 『독립신문』의 信과 황제의 信은 당연히 같은 것일 수 없었다. 『독립신문』이 信의 국제적 표현으로 만국공법을 들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반면(『독립』 1897. 3. 18), 황제가 말한 信은 제왕의 덕에 바탕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마치 법률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대표에 대해 법무대신 신기선이 “법률을 좀더 밝히기로 나라 일이 더 잘 될 것 무엇 있소(…) 덕을 닦아야 하지요“(『고종시대사4』 667)라고 응답했듯이, 독립협회 주도세력과 황제 및 황제 주변 관료들의 견해 사이에는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이 었보인다. 독립협회의 성장 및 해산에 이르는 추이는, 信이라는 글자를 둘러싼 해석투쟁의 과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다 논란을 불러온 쪽은 물론 독립협회식의 信과 法 주장이었다. 『독립신문』에서는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법률이며(『독립』 1897. 12. 11) 기왕에 있는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해도 문명과 부강을 기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독립』 1896. 10. 30; 97. 3. 18; 98. 4. 28 등 다수).

『독립신문』-독립협회가 법을 중시한 데는 일종의 전략적 차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국공법이 국가간의 근본적 동등성을 보장한다면, 법은 (민족)국가 내부의 동등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법률을 공평히 시행해야 하고(『독립』 1896. 7. 14; 97. 12. 11 등) 담뱃대를 훔친 줌도둑이건 아내를 훔친 官長이건 똑같이 재판소에 고발할 수 있어야(The Independent, 1896. 6. 23)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이 『독립신문』의 판단이었다. 『독립신문』은 신분의식의 타파를 주장하였고, 누구나 분간 없이 한 법률로 다스릴 신세계의 출현을 갈망하였다(『독립』 1896. 12. 12). 오로지 법률만을 의식하면 되는 질서를 꿈꾸어, 일개 평민이 대신들을 상대로 재판을 벌이는 일을 두고 “오백년 사기에 제일 가는 경사”라고 했을 정도이다(『독립』 1896. 7. 14). 공공연히 설파했던 기독교적 원리 또한 이같은 ‘법 앞의 평등’과 유비적으로 연결된다.

신 앞에 누구나 평등(『독립』 1896. 9. 3; 98. 1. 4 등)하다는 주장은 때로 군주라는 문제적 존재에까지 미친다. 실상 (민족)국가 내부의 동질성이나 그 근거로서의 법적 평등을 논할 때 가장 곤란한 존재는 군주라고 해야 할 터이다. 전

근대 왕조 국가의 감각으로 군주는 결코 제도 내부에 위치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바 있다. 『독립신문』에서는 법적 평등을 논할 경우 官民間 차별을 문제삼을지언정 황제를 논란하지는 않는다. “분외의 권리를 바라지도 말고 대황제폐하께서 허락하신 良法美規나 잘 시행”해야 한다 하여, 황제가 일종의 ‘전제’로서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독립』 1898. 7. 9). 공화제에 대한 은밀한 지향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대개 황제는 ‘부모’와 동일시되어 불가침의 권위로 인정받는다. 황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어찌 말을 아니하겠소”(『매일』 1898. 11. 8)라는 수사학으로 수렴될 때가 많다. 다만 기독교적 유일신이라는 새로운 권위가 등장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은 함께 살펴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군주조차 신을 경배하는 영국의 사례(『독립』 1897. 6. 29) 등을 참조할 때라면 “세상에서는 비록 君民 등분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매일』 1898. 6. 28)이라는 급진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도 한다.

『독립신문』에서 자주 사용한 ‘동포’라는 단어는 이같은 상황에서, 법적 평등의 이념 위에 구축된 개념이었다. (민족)국가 내부의 수평적 연대를 환기시키는 이 용어는 처음에는 주로 대외적 忠憤, 대내적 愛恤의 근거로 다루어진다. 외국의 수모에 분노·발분할 줄 아는 ‘동포’, 같은 처지에 보호하고 도울 줄 아는 ‘동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가 뚜렷해지는 것은 1898년 만민공동회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동포’는 권력에 맞서는 일종의 대항언어로서의 자질을 획득한다. 황제가 보낸 군대를 설득하면서 ‘동포’라고 하고, 보부상들과의 적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해서도 ‘동포’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렇다. 이것은 곧 황제가 그어놓은 대립선을 해체시키려는 전략이 된다. 실질적으로, 황제 중심의 수직적 질서에 맞서는 수평적 연대감이 곧 ‘동포’의 파토스가 된 것이다. 이때 이르면 立憲과 共和 문제를 둘러싼 독립협회 내부의 노선 차이¹²⁾에도 불구하고 협회 일반이 황제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고, 황제를 ‘天地父母’라 호칭한 상징적 완화책도 그 효과를 점차 잃게 된다. 황제가 독립협회를 문제삼으면서 國會와 협회의 차이점을 논한다든가(『고종시대사4』 682) 민과

12)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 혁명론의 구조와 전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5 참조.

官은 체모가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대저 인민이란 한둘만 있을 때는 분수를 지키고 뜻을 정하나 천백의 무리를 이룰 때는 자연히 浮氣가 생겨 처음에는 감히 발언치도 못할 것을 나중에는 감히 행치 못할 일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같은 책 744~45)은 ‘동포’의 이렇듯 위협적인 성장을 심분 의식한 까닭이겠다.

IV. 황제권의 강화와 ‘동포’의 재조정

독립협회 해산 후 황제는 國制를 반포하고(1899. 8) 황제권 강화 의지를 천명한다. ‘制’라는 말부터 ‘法’과 달리 황제의 명령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明治 초기에 제정된 일본 ‘헌법’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 국제의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 헌법이 ‘신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그밖에 의회·사법권 등에 대한 규정도 갖춘 반면, 대한민국 국제는 오직 황제의 “무한하온 君權”만을 논한다.¹³⁾ 만국공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君權의 대외적 보장을 위한 최소기반으로 그러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國制는 근대법 지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황제는 ‘법 위의 존재’가 되고 그밖의 국가 구성원은 ‘신민’으로 규정된다. 더욱이 황제권 강화의 파장은 國制 반포라는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듯 보인다. 고영근 등의 폭약 투척과 박영효·유길준 등의 황제 폐위·암살 기도가 이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독립협회 계열의 개화세력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급진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맞서듯 황제 또한 민간 정치세력에 대해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전 독립협회 간부인 안경수·권영진은 적절한 절차 없이 處絞되었고(『고종시대사5』 89), 황실범·국사범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斬刑이 부활되었다(같은 책 197). 1900년의 일이다. 국제 반포 즈음만 해도 잠복해 있는 듯 보였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표면화된다.

민간의 정치세력은 당연히 위축된다. 1899년 들어 지방민의 수령 고발이 갑자기 증가했다 이듬해 수그러졌다거나 독립협회 전 간부들의 사상·행동이 극단화되는 등 ‘급진성의 잠복’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없지 않았으나, 급진성

13) 전봉택,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0, 105~107면.

의 현실적 기반은 부재하였다. 『황성신문』이나 『제국신문』이나,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런 상황을 공유한 듯 보인다. 이 시기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전을 참고해 보자. 1903년 7월, 『황성신문』에서 지방 관직을 매매해 재정을 마련해서 백성을 구휼하자는 주장을 편다. 관직 하나당 곡식 1·2 백석을 받으면 많은 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典據 없는 제안도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제국신문』에서는 그렇잖아도 지방관은 진흙전 명목으로 수탈을 일삼고 있으며, 그래서 고작 나눠주는 진흙이란 백동전 1·2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황성신문』은 그런 문제야 지방관 擇任을 공정케 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자 『제국신문』은 기다렸다는 듯 신문에서 아무리 大聲疾呼해도 관리 擇任의 관습이 바뀌겠느냐고 묻는다. 이것은 이미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는 것이 『제국신문』의 지적이다. 『황성신문』은 한탄으로 『제국신문』의 지적을 수궁하면서, 그렇다고 신문으로서 직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릴 수야 있겠느냐고 되뇌이는 것으로 논전을 마무리한다(『황성』 1903. 7. 3~6; 『제국』 1903. 7. 1~4).

이 논전에서 엿보이는 『제국신문』의 절망은 사뭇 난폭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국신문』이 외국과 같은 新法의 필요를 말하고 『황성신문』이 보다 현실적인 것을 타이르는 처지였으나(『황성』 1902. 7. 18~19), 이제 『제국신문』은 실질적으로 현실의 변화가능성 자체를 포기한 듯 보인다. 그 사이, 논설 제목을 통해 ‘충심이 변하면 역심이 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일마저 있었다(『제국』 1902. 10. 24). ‘자포자기는 말 일’이라는 제목(『제국』 1903. 7. 2) 또한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말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늘 절망만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라서, 비슷한 시기에도 법률을 밝혀 민심을 순히 하라고 충고하고(『제국』 1903. 6. 22) 관원 선발의 원칙과 직무 수행의 자세를 논하지만 말이다(『제국』 1903. 6. 24; 6. 26). 독립협회가 공론장을 열었다면 이제 그 가능성은 폐색되었고,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더욱 명백해진다. ‘동포’라는 정치적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고, 쓰이더라도 이전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띤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다른 주체에 의해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독립신문』이 구미유학을 경험한 혁신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황성신문』은 남궁억과 유근·장지연·박은

식·신채호 등 이른바 改新 유학자들에 의해 발행된다. 남궁억은 同文學 출신 이었고 독립협회 및 『독립신문』에서 활동했지만¹⁴⁾ 이들 대부분은 1900년 전후에 이르러서야 ‘開化’의 필요를 절감하고 언론활동에 나선다.¹⁵⁾ 당연히, 같은 시기라고 해도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내보이는 인식은 같지 않다. 예컨대 만민공동회가 한창이던 1898년 11~12월을 확인해 보자. 서두에서 지적했듯 『독립신문』에서는 이때쯤 ‘동포’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71회의 출현을 기록한다. 가장 널리 쓰인 ‘인민’은 175회에 걸쳐 보인다. 그러나 같은 2개월간 『황성신문』에서 ‘동포’의 출현은 15회에 불과하다. 반면 ‘인민’은 『독립신문』과 거의 비슷하게, 146회나 등장할 정도로 애용된다.¹⁶⁾ ‘동포’라는 단어는 당시 일종의 ‘기록’의 언어로서 쓰였는데도, 즉 ‘거리’의 단어’를 그대로 따오는 맥락에서 쓰였지 논설 등의 용어로 쓰인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 “병정과 위관들도 다 우리 대한 동포라”(『독립』 1898. 11. 8)고 절규하거나 “忠憤 동포는 즉각 종로街上으로 來臨”(『황성』 1898. 11. 22)하라고 촉구하거나, 이들 ‘동포’는 대개 시위 현장에서의 언어를 재생한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은 ‘사실’의 선택 자체가 달랐고 따라서 언어가 달랐던 것이다.¹⁷⁾

과연 이처럼 다른 텍스트를 통해 1894~98년과 1900~04년의 차이를 읽을 수 있을까? 읽게 되는 것은 ‘시대의 차이’가 이날 ‘매체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나 반복하지만, 1900~04년은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차이가 공존할 것을 허용치 않는 시간대였다. 존재의 권리를 얻은 것은 『황성신문』의 언어뿐이며, 이런 점에서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1900~04년의 특색을 살피고 앞시기와의 비교를 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황성신문』이라고 1894~98년에

14) 이광린, 『개화기의 인물』, 연세대 출판부, 1993, 9~40면 참조.

15) 박은식·장지연 등을 중심으로 한 개신유학자들의 사상 추이에 대해서는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44~60면 참조.

16) 본 연구 제 1차년도 『독립신문』 입력시에는 전체 지면을 모두 대상으로 한 반면 제 2차년도 『황성신문』 입력에서는 관보·외보와 광고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다소의 자의적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17) 그러나 『독립신문』 영문판 및 『대조선독립협회회보』 편집을 담당했던 남궁억이 황성신문사 사장을 지낸 데서 보듯,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사이에는 연속의 면모도 있다. 초기 『황성신문』은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에 충실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는 터이다(이광린, 앞의 책, 28면 참조).

있었던 가능성의 극점에 무지했던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빈도는 적었지만 『황성신문』 역시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언어’이자 ‘저항의 언어’인 ‘동포’를 기록했던 터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같은 ‘동포’의 용법을 목격했던 『황성신문』에 있어 그후 ‘동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1900~04년, ‘동포’는 주로 愛恤과 연결된 단어가 된다(『황성』 1899. 12. 6; 1903. 6. 16 등).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었던 전략적 자질이 희박해지고, 忠憤과 애국의 열정조차 ‘동포’에서 멀어진다. ‘동포’가 과연 무슨 뜻인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황성신문』이 상기시키는 것도 ‘동포’의 옛 의미이다. 天地와 聖人이 공통의 부모인 셈, 사람이라면 모두 氣를 함께 하는 ‘동포’라는 사실이 논리의 출발점이 된다(『황성』 1899. 1. 25).¹⁸⁾ 한편에 이렇듯 낡은 보편주의가 자리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內廷諸公’과 ‘在野同胞’를 구분하는 어법이 등장하기도 한다(『황성』 1900. 8. 8). 정부에 참여하는 관원들이 한쪽에 있다면 ‘동포’는 다른 쪽에 위치한다.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연대를 환기하는 의미를 잃고 내부의 여러 지층 중 하나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동포’라는 단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 『황성신문』에서 ‘동포’는 평균 1개월 1회 미만의 출현을 보인다.

민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기도 한다. 『독립신문』-독립협회의 차별적 愚民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 시절, 民을 국가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기획 자체는 뚜렷했다. 그러나 1900~04년 『황성신문』에 오면 民보다 오히려 士를 강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윤치호가 愛民太過라는 죄목으로 파직될 무렵이다(『황성』 1900. 5. 4). 관·민 사이 차별을 강조한 황제의 목소리가 舊本新參으로 법률에까지 반영될 무렵이기도 하다.¹⁹⁾ 『황성신문』에서는 國이 서기 위해

18) 근대 이전 ‘동포’의 의미에 대해서는 권용기, 앞의 논문 참조.

19) 아관파천 이후 천명된 舊本新參의 원칙이 법률 정리작업에서 강력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899년 초 당시 법무대신이었던 신기선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같은 해 법규교정소에서 新制를 많이 채택해 법률을 정비할 것을 결정하는 등, 법률에서 신·구 교차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던 듯 보인다(도면회,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98~203면 참조). 그러나 죄인을 다스릴 때 「대전회통」에 의거하고 「대명률」을 출간하는 등, 이 시기의 법률 집행은 주로 구법에 의지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고종시대사 5』 817·

서는 먼저 士가 바로 서야 한다면서 士氣의 진작을 호소하고, 士氣를 발휘했던 모범적인 예로 조선시대의 士禍를 든다(『황성』 1899. 10. 31; 1903. 6. 24). 민에 대해서는, 논설과 기서의 교차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민이란 압제치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시각이 문젯거리가 되기도 한다. 『황성신문』이 논설에서 아이가 때리면 더 세차게 울듯, 물을 막으면 더 거세게 흐르듯 민 또한 그러하니 압제는 불가하다고 했을 때의 논란거리이다. 一蒼生이란 이가 반박 기서를 보내, 민을 압제해선 안 된다는 것은 惡정부의 상투구이며, 오늘날처럼 혁신이 필요한 데 민이 배우려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울 때는 압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제야말로 善정부에서 쓰지 않을 수 없는 요령이라는 주장이다(『황성』 1900. 7. 23~24). 민은 무작정 신뢰하고 동시에 계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시선이 교차하는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와 관련해서, ‘민간의 자율성’이나 ‘민간의 자생적 정치성’은 현저히 위축되는 듯 보인다. 정부를 비판할 때조차 정부 외부의 가능성은 좀처럼 탐색되지 못한다.

권력을 재편하려는 저항의 언어로 기능했던 ‘동포’가 위축된 것은 당연한 일 이겠다. 권력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 속에서 ‘동포’는 다른 길을 찾게 된다. 1900~04년, ‘동포’는 그 ‘다른 길’로서 시간축을 발견해 갔고, 결국 ‘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조해 내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주지하다시피 ‘동포’라는 말에는 동포애brotherhood의 상상력이 깃들어 있다. 다같은 형제이며 다함께 同氣라는 것이다.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이 단어에는, 그러나 부모라는 축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다. 황제를 ‘천지부모’나 ‘원수부모’라 할 때의 상상력이 그것이겠고, 기독교의 신을 ‘부모’라 호명할 때의 상상력도 마찬가지이겠다. 근대 초기, 이같은 상징적 부모의 가능성에는 우선 군주와 神의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황제가 ‘천지부모’로서의 역할을 저버렸을 때 독립협회 간부들이 기독교 개종의 길로 달려간 것²⁰⁾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하나, 1905년 이후 본격화된 가능성이 있다. ‘오래된 부모’로서의 단군의 발견이 그것이다. 이 ‘오래된 부모’를 발견할 때 ‘동포’는 비로소 시간축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의 『동국사략』(190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군기원설 및 삼한정

830).

20) 이광린,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217~38면 참조.

통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니와, 그 이전, 1900~04년에서 어떤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V. 역사의 발견과 지평의 확대

1898년 11월 학부에서는 평안도 공립소학교에 교과서용 책자를 보낸다. 『공법회통』 『서유견문』 『심상소학』과 역사서 3종, 지도 2종이었다(『황성』 1898. 11. 4~5). 지도는 대한圖, 지구圖가 각각 하나씩이었고, 역사서는 유럽·러시아와 중국·일본의 근세사였다. 특히 강조점을 둔 것은 『태서신사』인 듯, 훈령 마지막에 세계사 문제 例題를 여럿 달고는 “이상 문제는 다 『태서신사』를 先讀하고” 풀라고 충고한다. 한국 근대 초기에 『태서신사』라는 책, 그것으로 상정된 근세 유럽의 역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독립협회 및 하원홍 사건·혁명일심회 사건 등으로 정치범들이 종로감옥에 대거 투옥되어 있을 무렵, 성서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읽혔던 책도 『태서신사』와 『만국통사』였다고 한다.²¹⁾ 외국, 특히 유럽과 일본 근세사에 대한 관심은 『한성순보』 『한성주보』 발간 시기부터 익숙하게 목격해 오던 것이다. 『태서신사』의 본제목은 ‘西國百年來大事記’로서,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지면 대부분을 차지한 기사가 그러했듯, 역사라기보다 세계 時事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1905년 이후에는 『월남망국사』가 3종이나 간행되고 『을지문덕』 『강감찬전』 등이 발행되는 등 유럽 이외 지역 및 自國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역사 또한 관심범위에 들어오지만, 1894~98년은 물론이고 1900~04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먼저 『독립신문』을 확인해 보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독립신문』의 단군 인식은 독특하다. “단군 때부터 독립국이 되지 못”했다고 하여 기나긴 예측의 역사 제일 첫머리에 단군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독립』 1899. 10. 23). 하나라 禹임금이 천하 제후를 불러모을 때 단군도 아들 부루를 보냈으니 하나라의 속국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기자 또한 주 무왕에게 조회했다고 한다. “단군 기자

21) 위의 책, 229~33면 참조.

로부터 삼한에 이르러 3천년이 되도록 마침내 한 모퉁이의 궁벽한 것을 면치 못”(『독립』 1899. 1. 17)했다는 것이 역사인식의 대강이다. 대비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오직 대한제국의 탄생이다. 거리 연설에서도 “우리 나라이 단군 기자 때부터 자주 독립이란 이름도 아지 못하”(『독립』 1897. 9. 2)였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같은 단군 인식 및 역사 인식은 일반적이었던 모양이다. 부인협회도 여학교도 단군·기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독립』 1898. 10. 28). “자기의 나라로 말하면 단군 기자와 신라 고려가 어찌어찌하였는지 도무지 모른”(『독립』 1898. 1. 27)다는 개탄이 전무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當務와 産業에 밝아야 한다는 포괄적 맥락에서 스쳐가듯 등장한 말에 불과하다. “단군 기자/ 자주시고/ 신라 연호/ 건원이라(…)”고 하면서 전대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각은 꼭 한번, 투고된 독립가에서 발견될 뿐이다(『독립』 1896. 10. 31).

여기서 1905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민족’이 없었다는 지적을 떠올릴 수 있다. 1900년 『황성신문』 기사에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하나 그 용법은 ‘동방민족’·‘동양민족’·‘백인민족’ 같은 것이었다.²²⁾ 조금 앞서 『친목회회보』에도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지만, “邦境을 限하여 민족이 集했다거나 “隆暑冽寒의 地와 汙下剪劣의 位를 離하여 優高安樂의 地에 入함은 민족의 고유한 본심”이라고 할 때²³⁾ 그 의미는 오늘날의 ‘족속’이라고 하는 데 더 가깝다. 혈연·지연·문화 공동체라는 ‘민족’의 일반적 정의를 엄두에 둘 때 여기서는 地緣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혈연의 계기까지는 있다고 해도, 문화적 동질감이라는 계기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보면 일찍이 1894~98년에는 (민족)국가의 정체성에서 비현재적 영역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알아챌 수 있다. (민족)국가 고유의 언어·문자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국가라는 ‘공간적 구획’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역사는 별 관심을 끌지 않았다. 새로운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던 것이다.

1900~04년에는 상황이 다소 변화한다. 『연암집』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대한강역고』 『아연각비』가 출판되고²⁴⁾ 古來 疆域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다. 출판

22) 백동현, 앞의 논문 참조.

23) 장호익, 「사회경쟁적」, 『친목회회보』 6호, 1897. 12, 56면.

대상이 된 서적은 대개 19세기 전반의 것으로 수십 년의 시간 차이밖에 없으며, 따라서 ‘역사’라 부르는 부적절하지만, 강역에 대한 관심은 보다 오래된 과거에 대한 관심의 계기를 만든다. 1903년 『황성신문』에 근 1개월간 연재된 정약용의 『아한강역고』(『황성』 1903. 4. 14~5. 8)는 요동지방에 대한 관심을 전제하고 있었고, 『제국신문』에서 내건 ‘역사와 지리를 힘쓸 일’이라는 주장 배 후에는 간도 관할 문제를 둘러싼 청국과의 분쟁이 자리하고 있었다(『제국』 1903. 6. 25). 이범윤은 『北輿要撰』(1903)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한다. 고구려와 발해가 이 맥락에서 재인식되기 시작한다. 대외적 영토의식이 前代 지식유산과 결부되면서 점차 역사에의 관심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후일 김택영은 『동사집략』(1902)을 『역사집략』(1905)으로 재편찬할 무렵 외교권 상실 소식을 듣고 통분해 하며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보충해 넣었다고 하는데,²⁵⁾ 이처럼 역사는 영토 분쟁의 상황 속에서, 공간적 内外의 경계라는 지점에서 먼저 소용되었다.

『황성신문』 일반으로 따지면 古史가 특별한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독립신문』과는 달리 『황성신문』은 역사와의 ‘단절’을 강조하지 않고, “삼국사와 고려사는 吾東의 역사”라는 연속성의 의식을 비치지만, 실질적으로 전 시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本朝’, 즉 조선시대만을 문제삼는다(『황성』 1899. 11. 21). 한동안 제 3면에 고정란으로 두었던 ‘故事’에서도 조선시대 왕과 名丞의 일화를 주로 다루었다. 유형원이며 정약용 같은 학자를 참조할 때도 그 맥락은 철저히 현재적인 관심이었다. 정약용의 『수령考』를 관리 책임 원칙으로 제안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황성』 1899. 8. 3~4). 典故는 ‘익숙한 과거’ 속에서 탐색된다. 각종 外史 등 참조할 史書を 조금씩 늘려가고, 처음에는 영·정조대에 집중되어 있던 대상시기를 앞으로 조금씩 밀고 올라갈 뿐이다. 오래된 역사를 끌어들이는 때 그 참조대상은 주로 중국이다. 본국사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 원인을 따지기도 하지만(『황성』 1899. 11. 21; 1902. 2. 27), 『朝鮮古史』『삼국유사』를 虛誕과 荒淫鄙俚로 배격하는 등(『황성』 1902. 2. 27; 11. 24) 실질적인 확

24) 광무년간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성립」, 『한국의 역사인식』下, 창작과비평사, 1985, 423~28면 참조.

25) 김택영, 『韓國歷代小史』(1922) 발문.

대작업은 활발하지 못하다. 당연히 역사는 아직 단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아한 강역고』 연재는 “조선은(…) 箕子之所都”라는 말로 시작되었으며(『황성』 1903. 4. 14) 김택영은 『동사집략』은 물론 『역사집략』(1905)에 이르기까지 단군 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군이 桓因·神市와 더불어 三神의 하나라 하여 그 실재성을 인정한 것은 『韓國歷代小史』(1922)에 이르러서이다. 신채호가 그러했듯 기자 조선이 완전히 배격되고 内外 구분의 논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은 훨씬 후일의 일이다. 이와 더불어, 1900년대 후반 최고의 발간부수를 자랑했던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시대의 역사에 대해 공공연한 적대감을 토로하기에 이른다(『대한매일』 1908. 8. 8; 1910. 5. 27). 현재의 국가권력에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부정되고, 대신 新生의 원천으로서 상고 시대가 각광받는다. 역사는 이때 비로소 급진성을 띤다. 반면 『황성신문』에서 역사란 권력의 보충물로서 자리하는 역사이며, 근대적 의미에서 ‘역사’라 하기엔 너무 가까운 역사이다. 현재에서 조금 물러나 역사를 발견했으되, 그것이 아직 저항의 가능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지점에 『황성신문』은 위치해 있다.

VI. ‘동포’와 ‘민족’, 그 중간지대

문제는 다시 ‘동포’이겠다. ‘동포’라는 단어에서 수직적 질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잉여, 혹은 외부로서 작동한다. ‘동포’가 수평적 언어이며 민간의 언어라는 사실이 여기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국가 권력은 ‘民’·‘백성’·‘인민’이라고 하고 ‘국민’이라는 말도 피하지 않지만(『고종시대사4』 806; 『고종시대사5』 601) ‘동포’라는 호명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동포’라는 단어에서 ‘부모’를 상상하는 것은 이용하기 쉬운 전략적 거점이었으나, 1899년 이후 황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 ‘동포’의 공통 근거로서의 ‘부모’란, 따라서 한동안 뚜렷한 지시대상을 갖지 못한 채 부유한다. 수사학이 단번에 시들어 버리지는 않아서, 독립협회 해산 후 얼마간, 동포가 流離之境에 처한 까닭은 아첨하는 무리가 부모의 총명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황성』 1899. 1. 25) 정도가 눈에 띄기는 한다. 비슷한 시기 君이 가장이라면 民은 자식과 마찬가지로

가지라는 수사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수사는 점차 줄어들어 가거니와, 권력에 의해서도 그 자체 불온성을 내포한 것으로 평가된 듯 보인다. 예컨대 1900년 3월, 정부 인허를 받고 南草를 專賣하게 되었다는 旅閩이 나타나 한동안 물의를 빚은 사건이 벌어진다. 서울 부근의 南草商은 모두 철시하라고 하니 당연히 반발이 일고, 상인 중 하나가 農部에 청원서를 올린다. “同是 大韓제폐하의 赤子라 어찌 厚薄이 有”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청원서의 수사학이다. 이에 대한 農部의 답변은, 연사가 무엄하니 체포하여 엄하게 다스리라는 것이다(『황성』 1900. 3. 29). 그러나 ‘무엄’하다고 평결받은 이 수사학은 1898년 만민공동회 당시 황제 자신이 여러 차례 쓴 바 있었다. 독립협회에 친히 칙유를 내리면서 “嬰兒를 품은 것 같”다고 했고, “會商 양민이 고루 이 짐의 赤子”라고 했던 것이다(『고종시대사4』 723). 그러나 이제는 지형이 달라졌으므로, 똑같은 수사라고 해도 불온한 것이 된다. ‘동포’는 황제를 부모로 호명하려 하지 않고, 황제 또한 ‘동포’의 불온성을 경계한다. 그렇잖아도 아슬아슬하던 ‘동포’인 국민과 ‘부모’인 군주 사이의 연결은 더욱 희박해진다.

이후 목격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위에서 썼듯 독립협회 간부들은 대개 기독교의 ‘大군주’, ‘大부모’에게로 달려간다. 군주라는 인격적 존재 대신 영토라는 비인격적 토대가 ‘부모’로서 호명되기도 한다. “당당한 대한제국 父母之邦에 幸生한 동포”(『황성』 1899. 12. 6)라고 할 때의 용법 등이 여기 속한다. ‘父母國’은 유학생들이 본국을 지칭하기 위해 쓰던 말로서, ‘內地’보다 출현빈도가 떨어질 정도로 드물게 쓰이던 말인데, 이 시기에 와서 일반 용법으로도 종종 출현한다. 대체로는 “夫 동포의 所謂는 동일부모의 포대중으로 산출함”이라고 쓰면서도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는 특기하지 않는다(『황성』 1905. 9. 4). 그렇다면, 시간축으로의 이동이라는 가능성은 어떤가? ‘동포’의 역사상 근거가 확실해지는 것은 단군이 단일 선조로서 등장할 때이지만, 1900~04년 『황성신문』 이래 조금씩 확장되어 온 시간축이 그같은 변화를 예비했다면, 1900~04년의 ‘동포’는 본질상 역사적 상상력인 ‘민족’을 준비한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를 참조하면 ‘민족’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09년부터이다.

논설란을 기준으로 1908년 고작 7회 출현했던 ‘민족’은 1909년에 190회, 1910년에는 130회를 기록한다. 1910년에는 8월까지밖에 신문 발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일층 인상적이다. 같은 시기 ‘동포’는 매해 5백회에서 8백회 안팎까지 널리 쓰이고, ‘국민’은 3백~6백회 정도의 출현을 기록한다. ‘민족’은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를 두고 따지자면 단연 눈에 띈다. 1910년 일제강점 후에 ‘민족’이 더욱 의미심장한 단어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동포’에 비해 ‘민족’이 일층 문제적인 단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문화’와 ‘역사’라는 자질을 확보했기 때문일 터이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을 빌자면 ‘민족’이란 지역·조상·역사·종교·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한다(『대한매일신보』 1908. 8. 17). ‘민족’에서 이 모든 자질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동포’가 ‘국민’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수평적(-공간적) 확대의 언어라면 ‘민족’은 수직적(-시간적) 확대의 언어이다.

‘동포’나 ‘민족’이나 (민족)국가 외부의 힘에 맞서지만, 동시에 이 둘은 현실 권력과의 갈등 또한 함축할 수 있다. ‘동포’가 황제 중심의 질서와 충돌하는 양상은 만민공동회 시기에 잘 드러난다. 충돌 이후 수평적(-공간적) 확대의 길을 차단당한 ‘동포’는, 그러나 권력과의 갈등, 권력에서의 소외를 내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출현했던 ‘역사’는, 이처럼 권력과의 관계에서 ‘동포’가 내면화되는 길과 연결된다. 말하자면 ‘민족’은 외부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 아니라 내부적 권력투쟁의 언어로서 비릇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민족’이 저항의 색채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맥락에서 유념해 둘 수 있겠다.

이 문제는 ‘국민’과 ‘민족’의 구별이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적 언어라면 ‘민족’이 문화적 언어일 가능성이라든가, ‘국민’이 공간적 상상력이라면 ‘민족’은 시간적 상상력일 가능성 등. ‘동포’는 이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양상은 특이하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는 말이 수사학적 우회로를 갖지 못했고 ‘민족’에서도 그 정도가 약한 반면, ‘동포’는 그렇지 않다. ‘동포’는 발상 자체가 비유적인 언어라서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국민’과도 ‘민족’과도 친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동포’는—‘인민’과 더불어—

1910년 일제강점 직후에도 별 무리 없이 쓰일 수 있었다. ‘인민’이 일상적 사건의 기술에서 정치적 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10년 8월 이후의 급변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면, ‘동포’는 근본적으로 수사적인 자질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동포’는 특유의 탄력성으로 (민족)국가 내·외부를 둘러싼 긴장을 풍부하게 반영해 내고 있다. ‘민족’이 등장하지 않았고 ‘국민’ 또한 드물게 쓰였던 1890년대, ‘국민’과 ‘민족’이 점차 폭넓게 쓰이면서 의미가 분별되었던 1900년대, 국가가 소멸(대체)됨으로써 ‘국민’과 ‘민족’의 의미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191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의미나 그 구성원에 대한 시각은 계속 굴절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간다. ‘동포’란 특유의 수사학적 탄력성 때문에 그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한, 개념의 수준에서 시대 지형의 변화를 풍부하게 함축해 낸 단어라 할 수 있다. 1900~04년, 그 함축성은 무엇보다 ‘역사’의 점차적인 발견과 ‘민족’ 개념의 예비에 있었다.

주제어 : 민족, 국가, 동포, 역사, 수사학, 만민공동회,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참고문헌

-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
- 광무개혁 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8호, 1993.
- 권보드래,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독립신문』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3.
- 권용기,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집, 1999.
-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
-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성립」,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비평사, 1985.
- 도면희,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 백동현,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의식」, 『한국사학보』 10호, 2001.
- 신용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사회사상편』, 한국일보사, 1975.
- 이광린,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 _____, 『개화기의 인물』, 연세대 출판부, 1993.
-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0.
-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 혁명론의 구조와 전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5.
- 『고종시대사』 4·5, 국사편찬위원회, 1970.

<Abstract>

The Rhetoric of 'Brotherhood' and the Significance of 'History'

Kwon, Bodue-rae

In the course of nation-state building, the common identity as one nation people is important. The First and most impressive experience of one nation people was the experience of congregation of ten thousand(萬民共同會) in Korea. During a month congregation, people gathered without the old hierarchy and explored new horizontal solidarity. However, such a political movement ended in the failure of people and the empowerment of emperor. Brotherhood which developed through common political experience declined, but the rhetoric itself survived. The rhetoric of brotherhood, once quite political, lived discursive metamorphosis in 1900~04 period. Brotherhood became a negative term to express simple sympathy among people, and made the road to history.

The epistemology of history was underdeveloped in 1894~1900. Whereas the horizontal solidarity was emphasized, the vertical solidarity through history was rarely developed. In 1900~04, the period of political retreat, the history as the identity origin was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It made the spiritual and temporal identity of nation(民族) as much as the physical and spatial identity of state(國家), and its contribution revitalized in 1905~10. Then the rhetoric of brotherhood represented the unifying power of history and the negative strategy of history at the same time. As a figural word, 'brotherhood' expressed different stage of early modern period respectively.

Key Words : nation, state, brotherhood, history, rhetoric, congregation of ten thousand, The Independent, Hwang-Sung News, Korea Daily News